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**황 교 안** 인

2017년 3월 14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14583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「형법」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**황 교 안** 인

2017년 3월 14일

국무총리 황 교 안

국무위원
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
(법무부 소관)

◉법률 제14584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2항 전단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관계인 및 관계 기관·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법률사무소,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